

대전충남지방병무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사회복무요원 복학 관련 협조

- 1. 관련근거
 - 가. 병역법 제33조(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)
 - 나. 병역법 제73조(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)
 - 다.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(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)
- 2. 사회복무요원은 「초·중등 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등에 따라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,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 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ㅇ 협조사항
 - 1)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신청 시 제출받은 '**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'에 남은 연가** 기간을 감안하여 **복학이 가능한지** 여부 확인
 - 2) 복학 비대상자가 복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. 끝.



수신자 관내 대학의 장

주무관보무관리과 계복무관리과 보무관리과 보무관리과 보무관리과 과전결 2023.9.1.한지현장 양명준장 박동철

협조자

시행 복무관리과-4692 (2023. 9. 1.) 접수

우 3494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6번길 5, 대전충남지방병무청 (문화동)/ http://www.mma.go.kr

전화번호 042-250-4471 팩스번호 042-250-4479 / jhan715@korea.kr / 비공개(2)